성남시 단대동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3. 21.)

1. 건설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23번길 36 (단대동 130번지) 행복주택 60호

-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등을 통한 신청 관련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직접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31-710-3890~2)
- 19.9.27.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 단대동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3. 2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니 해당 신청자격별 본문의 세부 임대자격, 조건, 절차 등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입주자격(요약안내)
대학생	-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모집공고일 기준)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 사전에 국토교통부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메뉴>자가진단>공공주택(통합)>행복주택)를 활용하시면 계층별 지원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청약절차 및 일정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신청 및 서류접수는 우편접수와 현장접수로 진행됩니다.
 - ※ 가급적이면 우편을 통해 신청 및 서류접수를 해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우편접수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신청 및 서류접수장소: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130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36)
 - 청약접수 마지막 날은 접수자가 집중되어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자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후에는 수정이 일절 불가능합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세대	당 계약면	년적(m²)			기본 일	임대조건			최대경	검하시				
		공급			자수	주거	주거	그! 공용			임디	보증금(친	^턴 원)	월임대료	전환가능 임대2 보증금			최대 구조 및		
형별 대상	내장	호수	기존 예비 자	금회 모집	구기 전용	- 구기 -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계	계약금 (20%)	잔금 (80%)	(원)	한도액 (천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월 (년) 임대료	난방		
164	16A 대학생 16 0	대하세 16	내 16	H한색 16	_	10	16.4812	11.1530	7.3446	11.5944	43.5887	29,920	5,984	22.026	119,680	(+)11,000	40,920	64,680	10	
IOA			U	10	10.4012	11.1330	7.5440	11.3944	45,3007	29,920	3,904	23,930	119,000	(-)14,000	15,920	157,590	10	철근 콘크		
44A	신혼부부,	11			44.0931	29.8383	19.6494	31.0191	116.6156	90,000	18,000	72 000	360,000	(+)36,000	126,000	180,000		리트		
77/	한부모가족	• • • • • • • • • • • • • • • • • • • •	9	10	44.0331	29.0303	13.0434	31.0131	110.0130	30,000	10,000	72,000 3	72,000	72,000 3	300,000	(-)45,000	45,000	481,870	10	/ 개별
A,B타입 44B 서태부가	6	9		<i>11</i> 1 7560	30 2860	10 0//8	31 //85/	110 3600	91 600	18 320	73 280	366.400	(+)36,000	127,600	186,400	(14)	난방			
740	선택불가	0	44.7560 30.2869 19.9448 31.4854 118.3688 91,600 18,320	91,600 18,320 /		18,320 73,280		(-)45,000	46,600	488,270										

- ※ 16A형은 냉장고, 세탁기, 전기쿡탑, 책상, 서랍형 후드, 싱크, 수전, BMC상판, 신발장, 욕실장 등이 설치됨.
- ※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의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입니다.
- ※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 44A,B 타입 선택불가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되고,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해당 형별계층의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 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공가 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개별안내)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입주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금회 모집 이후 잔여 주택 또는 모집호수 등이 발생할 경우 세대원 수별 주택 입주가능 면적 등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기본 임대보증금 또는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공가 발생으로 계약 체결 후 미입주 해약 신청 시 위약금이 발생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계약자는 계약해지)합니다.
- 16A형은 냉장고, 전기쿡탑, 책상, 서랍형 후드, 싱크, 수전, BMC상판, 신발장, 욕실장 등이 설치된 빌트인 방식의 세대입니다.
- 26A형, 44A,B형은 서랍형 후드, 싱크, 수전, BMC상판, 신발장, 욕실장 등이 설치된 빌트인 방식의 세대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섀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는 일정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 동호별로 인근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소음, 진동,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입주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국민임대, 영구임대, 타행복주택 입주 시 제외) 당첨자 자격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공통사항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u>무주택세대구성원</u>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 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
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대학생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 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계층의 경우 2인 1주택 기준으로 신청 가능)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 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I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후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입주 자격요건(자산, 소득, 무주택여부)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 주자 모집 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3. 21.) 현재, <u>무주택자</u>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⑨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⑭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 ①-②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④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최종 소득 · 자산기준			
구분	기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적용 자산기준		
			소득기준	총자산기액	자동차가액	
	1인	0인	120%	100,000,000원	-	
	2인	0인	110%	100,000,000원	-	
대학생	2 년	1인	120%	109,000,000원	-	
네약경		0인	100%	100,000,000원	-	
	3인 이상	1인	110%	109,000,000원	-	
		2인 이상	120%	119,000,000원	-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함, 이하 동일)
 -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구전 구	100%	110%	120%			
1인	-	-	4,179,557원 이하			
2인	-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	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	하여 산정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 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제 3호 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신청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용인시, 하남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용인시, 하남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3. 21.) 현재. <u>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u>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切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切와 ③~⑥를, 한부모기족은 ①-⑤와 ③~⑥를 모두 갖춘 사람

- ①-② (신혼부부) 혼인중인 사람
-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공급신청자 기준 혼인(재혼)합산기간】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기 이스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3인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4인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120%	
5인	8,775,071원 이하	100%	10,530,085원 이하	120%	
6인	9,563,282원 이하	100%	11,475,938원 이하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구분	마쁘이 어ㅂ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적용	자산기준		
	맞벌이 여부	기구현 구	(태아포함)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2인	0인	110%	345,000,000원	37,080,000원	
		2 긴	1인	120%	380,000,000원	40,790,000원	
한부모가족	X		0인	100%	345,000,000원	37,080,000원	
		3인 이상	1인	110%	38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20%	414,000,000원	44,500,000원	
		2인	0인	110%	345,000,000원	37,080,000원	
		3인	0인	100%	345,000,000원	37,080,000원	
	X		1인	110%	380,000,000원	40,790,000원	
	^		0인	100%	345,000,000원	37,080,000원	
		4인 이상	1인	110%	380,000,000원	40,790,000원	
신혼부부			2인 이상	120%	414,000,000원	44,500,000원	
예비신혼부부		2인	0인	130%	345,000,000원	37,080,000원	
		3인	0인	120%	345,000,000원	37,080,000원	
	0	3 년	1인	130%	380,000,000원	40,790,000원	
			0인	120%	345,000,000원	37,080,000원	
		4인 이상	1인	130%	380,000,000원	40,790,000원	
		, -	2인 이상	140%	414,000,000원	44,50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	100%	110%	120%	130%	140%	
2인	-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7,040,426원 이하	7,581,997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9,358,244원 이하	10,078,10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10,723,007원 이하	11,547,854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11,407,592원 이하	12,285,099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12,432,267원 이하	13,388,595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신청자 직계존속신청자 직계비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중복시 전부 무효처리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됩니다.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용인시, 하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고,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및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로 확인하며 단, 해당 서류로 실제 근무지 확인 불가 시 신청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25. 4. 1.(화) ~ 4. 7.(월)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 구편 및 현장접수 주소 (우편번호 1314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36 단대동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모집 담당자 앞	'25. 4. 15.(화) 16:00 이후 (확인)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ngnam. go.kr),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dc.co.kr) 및 개별안내	'25. 4. 18.(금) ~ 4. 23.(수) 10:00~17:00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발송주소 (우편번호 1314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36 단대동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모집 담당자 앞 * 4.23.(수)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 까지 유효함	'25. 7. 25.(금) 16:00 이후 (확인)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ngnam. go.kr),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dc.co.kr) 및 개별안내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별도게시	당첨자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 (현장계약) ※ 예비순위에 따라 따라 계약기간 상이

- 가급적이면 우편을 통해 신청 및 서류접수를 해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우편접수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입주자 모집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현장방문 대신 대표번호(☎031-710-3890~2)를 통한 전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5.4.15(화)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25.4.18(금)~4.23(수)]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최종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안내
- 당첨자(예비자 포함) 발표는 자격조사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별도 개별통보 합니다.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돌아가니, 정확하게 신청(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지정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등기우편	· 보내는 곳: (우)1314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36 단대동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모집 담당자 앞 ※ 신청 및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기간 내 우체국소인분까지 인정)으로 접수 처리하며, 일반우편으로는 서류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접수시간: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장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36 단대동행복주택 관리사무소 (8호선 단대오거리역 7번 출구, 도보 11분 거리)

- ※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우편접수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 청약신청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5.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5.04.15.(화) 16:00 이후]

청약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dc.co.kr) 및 개별 문자안내

■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 서류제출기간 : 2025.04.18.(금)~04.23.(수)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일자가 '25.04.23.(수)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일반우편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7. 신청서류」및 성남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 확인하여 제출

- * 서류제출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36 단대동행복주택 관리사무소(우편번호13145) 입주자모집 담당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봉투 겉면에 <u>"이름/접수번호/주택형"</u> 반드시 기재 (예. 홍길동/30021/16A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성남시청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접수번호 확인
- * 서류는 누락없이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 입주자 당첨 선정 과정에서 제외(부적격 처리)합니다.
- *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 또는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도달여부 조회)

7.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 3. 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학생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하여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발급 시 신청인 및 세대구성원 전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제출서류

• 청약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사항	부수
청약 신청서 (붙임2)	• 대상자: 신청자 * 청약 신청서 서식이 계층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계층별 청약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통

• 서류제출대상자 공통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 대상자: 해당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		
및 제3자 제공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1통	
동의서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15	
(붙임4)	* 만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직접 정자 서명 또는 날인(흘림 서명 불가)		
(금융·신용·보험정보)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1통	
제공 동의서	※ (주의) 서류 위·변조(대리서명)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붙임4)	에게 책임이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4)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	1통	
(2 2 -)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당첨 및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대상자: 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대상자: 신청자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 당사자,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mark>상세로 발급)</mark> [해당자만 제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대학생 계층", "한부모가족 "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결혼 여부 상관없이 필히 제출,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제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행정 <u>복</u> 지 센터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재학증명서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첨부양식)를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대 학 생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계 층	해당자만 제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초본(동일 거주지 확인용) • 대학생 계층 실질적 부양자 확인 각서(공사 양식)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계층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공동신청 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확인서(공사양식) 제출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며 혼인합산기간 확인을 위해서 제출 필요)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공고일 현재 소득 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임의 (계속)가입자','미가입자','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해당 직장(세무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5. 7. 25.(금) 16:00 이후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dc.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최종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홈페이지 별도 게시
-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 안내 [개별안내]

-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유선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u>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u>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단대동행복주택 관리사무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36 1층)로 서면 또는 유선 (031-710-3890)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계약 대상자 별도 안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첨부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9.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대학생은 신청자 본인)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한 주택으로서 다음 '가'부터 '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 5. 8. 이전「건축법」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 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보유한 분양권등이 '18. 12. 11.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3'영보시드램을 중에 포외되지 많이 포장이 필요한 경구 전한 중청시규들 제물론이 포장 지나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 동 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공시가격 • 토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 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 동 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무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노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가동차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노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가동차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도차에 하하여 사춘하다 해단세대가 2대 이상이 자도차를 소오하 경으에는 간간이 자도차가앤 주
자동차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높은 사랑가액을 기준으로 아고, '내기완경모진법」제58소제3양에 따는 국가나 시방사시단제의 모소들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동차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0 ,	• .	하며 아래이 겨오르 제이하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상애인 복시법」세39소에 따른 상애인사용 사동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워에 관하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시의 포걸히 사건			
			시크 포르히 시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기타 공적이전 소득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 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 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총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자산		선박·항공기	-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관련항목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최대 거주기간 10년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20년 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 보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새로 적용합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년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주차등록 허용대상은 고가차량이 아닌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이며, 이외 차량은 주차등록 및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세대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 고가차량: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해 지는 입주자격 기준 자동차가액 초과 차량 * 임차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 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대학생이 소유한 차량은 고가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등록이 불가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공고일 기준 3,708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 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동차를 공유(지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전체를 산출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및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추가로 모집한 사람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갱신계약 등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고득기군 모파 미월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를 확인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 대학생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성남시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반드시 우리 공사(단대동행복주 택 관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36)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됩니다.

- 본 주택은 단대로23번길 36에 위치한 행복주택(60호)입니다.
- 본 대지 서측에는 단대어린이집과 단대동행정복지센터, 북측에는 단대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 단지 부대시설은 기계실, 방재실/경비실, 무인택배, 복리시설(북카페, 체력단련실)가 있습니다. 복리시설은 지역편의시설로 인근주민도 사용가능합니다.
- 단지 주변도로의 통과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단지 차량 진출입시 경고등 알림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취사용 연료는 도시가스입니다.
- 단지의 특성상 단지 내외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는 유아놀이터와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 있습니다.

단지여건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에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일부 세대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승강기(엘리베이터) 이용)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전기·발전기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 31대(장애인주차장 1대, 전기자동차 1대 포함)로 되어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1m입니다.
-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호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는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및 발코니

- 발코니는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콘크리트 난간 및 안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 22 -

마감재 및 발코니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엘리베이터) 홀에는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 하여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기타사항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성남시 및 성남도시 개발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1.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효율기자재	적용	전동기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침실 1개소, 거실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출입구 1개소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지식경제부 고시「고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 설치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 전화문의: ☎031-710-3890~2 임대문의 ■ 입주자 모집 사무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36 단대동행복주택 관리사무소 해당 장소에서의 임대공급 관련 업무는 아래 정해진 일시에만 가능하며, 행복주택 세대 현장 유니트(견본주택)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처리가능 • 청약접수기간: 2025. 4. 1.(화)~4. 8.(월) 10:00~17:00(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일정 • 우편 및 현장접수 장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36 단대동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노루목공 0 성남중앙병원 O 진흥더블파크 0 어울림공원 중부초등학교 남한산성입구역 은행동현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23번길 36 파리바 청약 성남단대푸르지오 금광시장 아파트 성남동 ♂ 성남서중학교 서류제출 성남동중학교 성남교회 계약체결 장소 급광지구대 성남세무서 단대동성당 제1공단 (근린공원 아자동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성남금광동 금광1동 남한신 행정복지센터 카파트 0 뿅의전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36 단대동행복주택 관리사무소 ■ 오시는 길 • 버스 이용시 - 단대동행정복지센터,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하차 - 일반버스: 30, 33, 51, 240, 382, 720-1A, 452, 10, 10-1, 10-2, 810 - 좌석버스: 333 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시 - 8호선 단대오거리역 7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9분 •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21.



